

「아동 수당」 제도에 관하여 (고베시 안내)

평성 23년 10월부터 새로운 「아동 수당」 제도가 시작, 지급 요건 등이 변경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인정 청구가 필요합니다.

1. 지급 요건

(1) 고베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단기재류자 등을 제외) 이 되어있는, 중학교 수료 전의 아이 (생년월일이 1996년 4월 2일 이후) 를 양육하고 있을 것.

* 소득제한은 없지만 부모(양쪽이 같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청구할 것.(아이의 아버지 소득이 어머니

소득보다 높을 경우, 아버지 이름으로 청구할 것)

* 청구자와 대상 아이 전원에 대해, 재류자격과 재류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첨부이 필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복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ex.)

(2) 10월부터 변경되는 점

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는 지급대상외 입니다.(유학 등은 제외)

②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아이에게는 시설 설치자 등을 통해 지급합니다.

③ 부모가 이혼 협의 중인 상태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④ 부모가 양쪽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지정한 사람(국내 거주자에 한정)에게 지급합니다.

⑤ 미성년자 후견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후견인에게 지급합니다.

2. 수당액

0~3 세 (일률)	월액 15,000 엔
3 세~초등학교 수료 전 (첫째 아이·둘째 아이)	월액 10,000 엔
(셋째 아이)	월액 15,000 엔
중학생 (일률)	월액 10,000 엔

◆ 청구처

거주지 구의 구청 · 지소 · 호쿠신(北神) 담당 양육 지원계 (니시구「西区」는 西神中央出張所에서도 가능)

◆ 문의처 (일본어로 부탁드립니다.)

시종합 콜센터 (☎333-3330) 또는 상기의 청구처